

의안번호	2209078
의 퇴 인	송석준 의원
회 답 일	2025. 3. 20.
추계번호	25F165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출산장려금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04조의36 (출산장려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- 공제율: 30% - 적용기한: 2030.12.31. ※ 미공제분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4조의36 (출산장려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의 일부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4조의36 신설)
 - 공제율: 30%
 - 적용기한: 2030.12.31.
 - 단,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, 법인세·소득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등의 이유로 미공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, 10년간 이월공제 허용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규모를 추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하나, 관련

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현행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과세자료 및 기업 재무제표 등에서 출산장려금 항목을 구분하여 집계할 수 없음
 - 출산장려금은 회계상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(경조사비) 등에 포함되어 개인 및 법인 소득 산출시 비용으로 처리되는데, 이 과정에서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집계되지 않음¹⁾
- 한편, 현행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은 일정한도로 근로소득에 비과세되며 이에 대한 과세정보가 존재하나, 이를 바탕으로 출산장려금 규모를 추산하는데 한계가 존재
 -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은 1인당 월 20만원 범위²⁾내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집계되나, 이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은 집계되지 않음
 - ※ 출산보육수당: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
 - 또한,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을 구분하여 집계하지 않아 출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음
 - 참고로, 최근 5년간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 적용인원 및 금액은 2019년 48.1만명, 3,357억원, 2023년 47.1만명, 3,414억원 등
 - ※ 2023년 이전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1인당 10만원으로,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 통계에서 제외됨

[표 1]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: 2019~2023년

(단위: 만명,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인원	48.1	47.0	46.1	47.2	47.1
금액	3,357	3,280	3,204	3,207	3,414

주: 2023년 이전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 중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소득 집계
자료: 국세청, 국세통계연도, 각 년도

1) 2024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손비처리하도록 법령을 명확화함

2) 2023년말 「소득세법」 개정으로 출산·보육수당에 대한 1인당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